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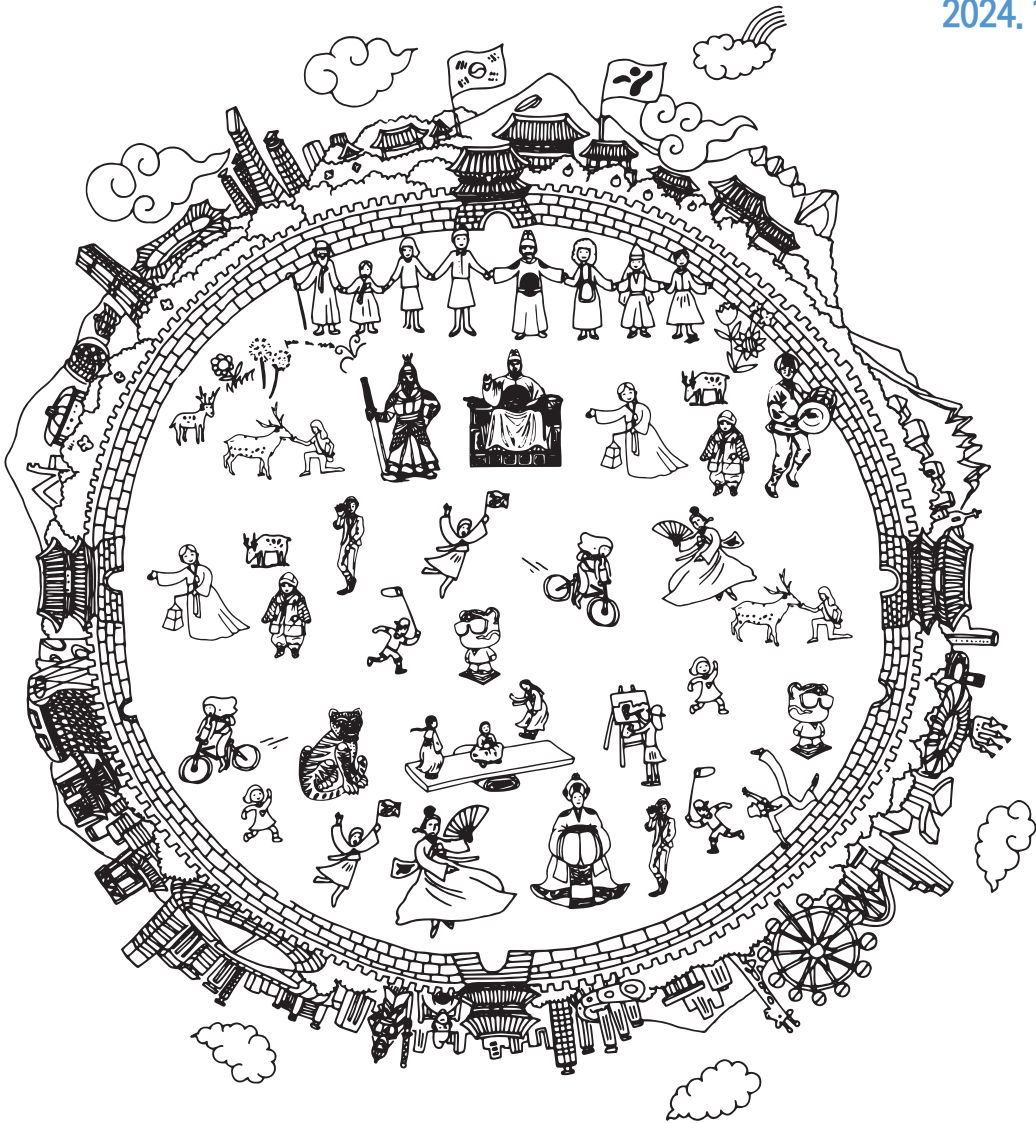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42호
2024. 1. 5.(금)



목 차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정 정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11

서울특별시교육청**[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대외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개정 추진
- 나. 본청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초등교육과로 일원화(통합)
- 다. 직속기관 명칭 변경(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라. 본청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기능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일원화(통합)
- 마.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내 시설물 등 명칭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내용

- 가. 대외협력담당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수정(안 제8조)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분관장’을 ‘분원장’으로 수정(안 제9조 제3항, 제14조, 제20조~제23조, 제25조)
- 다. 초등교육과 분장 사무 중 ‘초등 교원 교권보호’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신설(안 제9조제5항)
- 라. 중등교육과 분장 사무 중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중등 교원 교권보호’ 삭제(안 제9조제6항)
- 마. 교육시설안전과 분장 사무 중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바. ‘생태체험학습관’ 을 ‘생태체험학습장’ 으로, ‘과학정보센터’ 를 ‘융합과학자료실’ 로 수정(안 제22조제4항, 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bmw7289@sen.go.kr (※ 문의: 전화 02-2282-8643)

4.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를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16호 중 “과학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4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제45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3호 및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제9조제6항제47호 및 제4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제7호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 을 같은 조 제6항제7호로 이동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과학전시관” 과 “분관” 을 각각 “융합과학교육원” 과 “분원” 으로, 제2절 중 “과학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제20조 중 “관장” 과 “과학전시관장” 을 각각 “원장” 과 “융합과학교육원장” 으로, 제21조제1항 중 “과학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0호 중 “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관” 을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전시관” 을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과학정보센터” 와 “전시관” 을 각각 “융합과학자료실” 과 “융합과학교육원” 으로, 같은 조 제13호 중 “분관” 을 “분원” 으로, 같은 조 제17호 중 “전시관내” 를 “융합과학교육원 내”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분관장” 을 “분원장”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분관장” 과 “관장” , “분관” 을 각각 “분원장” 과 “원장” , “분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획조정실) ①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가제공무원으로 -----.	② -----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
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③ (생략)	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운영 지도	16. ----- <u>융합과학교육원</u> -----
17. ~ 47. (생략)	17. ~ 47.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1. ~ 41. (생략)	1. ~ 41. (현행과 같음)
42. <u>초등 교원 교권보호</u>	42. <u>(삭제)</u>
<신 설>	<u>4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신설>	<u>4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u>
43. 생태·환경·에너지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u>45.</u> 생태·환경·에너지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44. 생태전환교육 운영	<u>46.</u> 생태전환교육 운영
45.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	<u>47.</u>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
46.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u>48.</u>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47.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u>49.</u>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4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획 및 총괄	<u>50.</u>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획 및 총괄
49.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u>51.</u>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50. 그 밖의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u>52.</u> 그 밖의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1. ~ 46. (생략)	1. ~ 46. (현행과 같음)
47.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u>47. (삭제)</u>
48. 중등 교원 교권보호	<u>48. (삭제)</u>
49. ~ 60. (생략)	<u>49. ~ 60. (현행과 같음)</u>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⑤ (생략)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	7. (삭제)
8. ~ 22. (생략)	8. ~ 22.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
8. 그 밖의 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8. 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9. 그 밖의 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총무부) ① ~ ⑤ (생략)	제14조(총무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남산 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1. ----- 융합과학교육원 --분원----- -----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제2절 ----- <u>융합과학교육원</u>
제20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원장) ----- <u>융합과학교육원장</u> -----.
제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에 총무부, 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제21조(하부조직) ① ----- -- <u>융합과학교육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총무부) ① ~ ③ (생략)	제22조(총무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u>전시관</u> 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 <u>융합과학교육원</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u>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관</u>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 - <u>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u> -----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획운영부) (생략)	제23조(기획운영부) (현행과 같음)
1. <u>전시관</u>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u>융합과학교육원</u>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u>과학정보센터</u> 운영 및 <u>전시관</u> 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u>융합과학자료실</u> ----- <u>융합과학교육원</u>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분관</u> 운영에 관한 사항	13. <u>분원</u> -----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의 <u>전시관내</u>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7. ----- <u>융합과학교육원 내</u> ----- ----- -----
제25조(<u>분관장</u>) ① <u>분관장</u> 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25조(<u>분원장</u>) ① <u>분원장</u> ----- ----- --.
② <u>분관장</u> 은 <u>관장</u> 의 명을 받아 그 <u>분관</u> 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u>분원장</u> -- <u>원장</u> ----- <u>분원</u> -----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1월 일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39호(2023. 12. 29.)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 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성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주민조례발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 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성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성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 °°자치구 °°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 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화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화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회의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여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을 수정함(제7조제2항)

나. 법령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함(제12조제4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